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08-0098575  
(43) 공개일자 2008년11월11일

(51) Int. Cl.

G06Q 40/00 (2008.03)

(21) 출원번호 10-2008-0105529(분할)  
(22) 출원일자 2008년10월27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62) 원출원 특허 10-2006-0131641  
    원출원일자 2006년12월21일  
    심사청구일자 2006년12월21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

(72) 발명자

박상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38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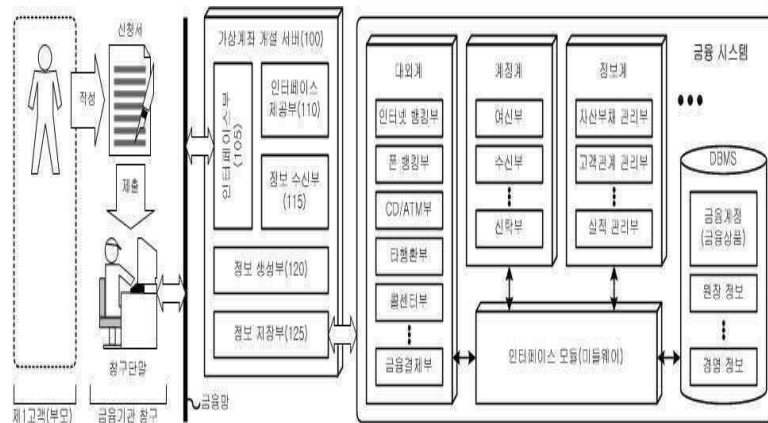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54) 신용담보 가상계좌 운용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신용담보 가상계좌 운용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서버에서 가족 구성원 중 특정 가족 구성원 명의로 개설된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를 상기 가족 구성원에게 할당하는 단계와, 서버에서 상기 가족 구성원 중 가족 대표의 신용한도를 확인하여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 및 서버에서 상기 확인된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을 이용하여, 상기 가족 대표가 설정한 기준 또는 상기 가족 대표의 승인에 따라 상기 가족 구성원에게 할당된 가상계좌에 금액을 충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 도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버에서 가족 구성원 중 특정 가족 구성원 명의로 개설된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를 상기 가족 구성원에게 할당하는 단계;

서버에서 상기 가족 구성원 중 가족 대표의 신용한도를 확인하여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 및

서버에서 상기 확인된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을 이용하여, 상기 가족 대표가 설정한 기준 또는 상기 가족 대표의 승인에 따라 상기 가족 구성원에게 할당된 가상계좌에 금액을 충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용담보 가상계좌 운용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 <15> 본 발명은 서버에서 가족 구성원 중 특정 가족 구성원 명의로 개설된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를 상기 가족 구성원에게 할당하는 단계와, 서버에서 상기 가족 구성원 중 가족 대표의 신용한도를 확인하여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 및 서버에서 상기 확인된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을 이용하여, 상기 가족 대표가 설정한 기준 또는 상기 가족 대표의 승인에 따라 상기 가족 구성원에게 할당된 가상계좌에 금액을 충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용담보 가상계좌 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 <16> 가상계좌는 은행의 모(母)계좌 또는 대표계좌에 딸린 가상의 `자(子)계좌'로써 실물 통장은 아니며 모계좌와 연계된 수많은 전산코드(CMS코드)가 일종의 계좌의 역할을 수행한다.
- <17> 금융기관은 현재 모계좌와 연동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메일뱅킹, 휴대폰 자금이체, 전자지갑 등 다양한 P2P 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8> 특히 `가상계좌'는 실계좌와 동일한 체계를 가진 계좌로서 금융공동망에서 통용되는 기능과 인식번호(Identification Number)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신용카드, 대출카드, 보험수납, 공과금 수납, 인터넷 결제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다.
- <19> 이렇듯, 가상계좌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타사에 대한 경쟁력 고취 및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 <20>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21>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서버에서 가족 구성원 중 특정 가족 구성원 명의로 개설된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를 상기 가족 구성원에게 할당하는 단계와, 서버에서 상기 가족 구성원 중 가족 대표의 신용한도를 확인하여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 및 서버에서 상기 확인된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을 이용하여, 상기 가족 대표가 설정한 기준 또는 상기 가족 대표의 승인에 따라 상기 가족 구성원에게 할당된 가상계좌에 금액을 충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용담보 가상계좌 운용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 <22> 본 발명에 따른 신용담보 가상계좌 운용방법은, 서버에서 가족 구성원 중 특정 가족 구성원 명의로 개설된 실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를 상기 가족 구성원에게 할당하는 단계와, 서버에서 상기 가족 구성원 중 가족 대표의 신용한도를 확인하여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 및 서버에서 상기 확인된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을 이용하여, 상기 가족 대표가 설정한 기준 또는 상기 가족 대표의 승

인에 따라 상기 가족 구성원에게 할당된 가상계좌에 금액을 충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23>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 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 <24>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5> 또한, 이하 실시예는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것이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26>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 <27> 도면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 <28>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소정의 제1고객(예컨대, 부모 등)이 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고객(예컨대, 자녀 등)이 사용할 가상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에서 상기 제1고객 명의로 개설된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제1고객이 상기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금융기관 창구에 방문하여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창구직원에게 제출하면, 상기 창구직원이 소정의 창구단말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서에 대응하는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 신청 정보를 제공하면, 본 도면에 따른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에서 상기 제공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고객에게 상기 제2고객이 사용할 마이너스론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다.
- <29>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30> 이하, 본 도면1에 도시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1고객으로부터 제공되는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라고 한다.
- <3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 구비되는 창구직원이 이용하는 창구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창구단말은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된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 <32>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제1고객은 상기 제2고객이 사용할 상기 가상계좌의 개설을 위해 상기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창구를 통해(또는 창구직원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서(예컨대,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항목을 기입하기 위한 서식이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고(또는 상기 창구직원이 상기 제1고객을 방문하여 상기 제1고객으로 하여금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상기 작성된 가상계좌 개설신청서를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면, 상기 청구직원은 소정의 청구단말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를 입력 (또는 선택)하고, 상기 청구단말은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된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3> 여기서, 상기 청구단말은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청구직원이 이용하는 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청구단말과 연결되는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는 상기 가상계좌가 개설되는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청구단말과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를 연결하는 상기 금융망은 상기 청구단말과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 간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당행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34> 상기와 같은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고객이 작성하는 가상계좌 개설신청서와, 상기 청구직원이 이용하는 청구단말 및 상기 청구단말과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제1고객이 상기 제2고객이 사용할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다.
- <35> 상기 제1고객의 요청에 의해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금융기관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예컨대, 여신, 수신, 외환, 금융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정의 금융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36>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금융기관의 지점(및/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당행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청구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37>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상기 금융기관의 지점(및/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CD/ATM(Cash Dispenser/ Automatic Teller Machine)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 및/또는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및/또는 다른 금융기관 지점)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 및/또는 공공의 장소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CD공동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38>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인터넷 बैं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인터넷 बैं킹 서버를 통해 TCP/IP 기반 백본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예컨대, 유선 인터넷, 및/또는 IEEE 802.11x 기반 무선랜,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등)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예컨대, 상기 유선 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및/또는 노트북, 상기 무선랜/휴대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노트북 및/또는 휴대단말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39>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무선 बैं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무선 बैं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및/또는 DataTAC/ 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상기 이동통신망에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및/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단말 및/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및/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및/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40>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IC칩 기반 무선 बैं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IC칩 기반 무선 बैं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

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및/또는 DataTAC/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금융IC칩이 탑재된 무선 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IC칩 기반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1>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텔레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텔레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유선 음성통화망(예컨대,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통화단말(예컨대, 전화기), 및/또는 소정의 무선 음성통화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통화단말(예컨대, PCS 및/또는 GSM 단말 및/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홈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홈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전기기(예컨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지털TV 및/또는 냉장고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TV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TV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리턴채널(Return Channel)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지털TV(예컨대, 양방향 디지털TV, 위성 DMB 단말, 지상파 DMB 단말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금융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전산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업점(또는 창구)에서 발생하는 여신 또는 수신 또는 신탁 또는 외국환과 같은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계정계와, 본부업무의 처리와 영업점 정보지원 및 고객정보 관리를 처리하는 정보계와, 상기 금융시스템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시스템(및/또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접속,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 통신망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인터넷 뱅킹, 무선 뱅킹, IC칩 기반 무선 뱅킹, 텔레뱅킹, TV 뱅킹 등)에서 상기 금융시스템으로 접근,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동망(예컨대, CD공동망, 금융공동망)을 통한 다양한 금융거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대외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금융 시스템 내 구성 요소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미들웨어(Middleware) 플랫폼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모듈과, 상기 금융 시스템 내 구성요소에서 각각의 기능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정보(예컨대, 원장 정보, 및/또는 고객 정보, 및/또는 경영 정보 등)를 저장 및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45>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당업자의 의도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이 구비되는 각 금융기관의 종류(예컨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탁은행)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외국환계 모듈(도시생략), 투자금융계 모듈(도시생략), 국제계 모듈(도시생략)과 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더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46>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상기 DBMS는 상기 금융기관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을 저장하는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는 상기 금융기관이 상기 금융거래 고객에게 제공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예컨대, 고객원장, 수신원장, 담보원장 등)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예컨대, 각 원장의 속성/기능을 보다 구체화 및/또는 보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부가정보가 관계형(Relationship)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47>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각 금융기관의 종류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를 기 숙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원장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원장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는 것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48>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는 상기 창구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4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는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과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1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5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창구단말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창구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는 상기 금융망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창구단말과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창구단말에 구비된 가상계좌 개설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1>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는 소정의 창구단말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에 접속시,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창구단말에서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창구단말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10)와,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15)와, 상기 수신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제1고객에게 개설할 가상계좌에 대응하는 소정의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120)와,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상기 고객 계좌(예컨대, 모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계좌의 계좌원장과 연계하여 상기 생성된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12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52>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는 소정의 창구단말이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에 접속시, 상기 창구단말에 구비된 기능구성에 대응하여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로 전송할 수 있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창구단말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53> 이후, 상기 창구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상기 금융망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로 전송한다.
- <54>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창구단말이 소정의 금융망에 연결되는 창구단말인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는 상기 창구단말에 구비된 가상계좌 개설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1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창구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5> 상기 정보 수신부(115)는 상기 창구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금융망을 통해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105)와 연동하여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상기 정보 생성부(120)로 제공한다.
- <56>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고객정보(예컨대, 제1고객 정보)와,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정보(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와, 상기 가상계좌 사용 고객정보(예컨대,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제2고객 정보)와, 상기 가상계좌별 사용한다 정보와, 가상계좌별 금액 충전정보(예컨대, 잔고없음 또는 잔고부족시 자동으로 모계좌로부터 충전, 가상계좌 사용한다 초과시 자동으로 모계좌로부터 충전 등)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57>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115)는 상기 수신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58> 여기서, 상기 가상계좌 개설 유효성 확인은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모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계좌(예컨대, 제1고객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가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실제 계좌로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59> 상기 정보 생성부(120)는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근거로 상기 제1고객 명의로 개설되는(그러나, 상기 제2고객이 사용하는) 상기 가상계좌에 구비될 소정의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정보와,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D/B에 구비된 계좌원장에 포함되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60>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 구성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61> 상기 정보 생성부(120)에 의해 상기 가상계좌에 포함될 소정의 가상계좌 원장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125)는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D/B에 구비된 상기 모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연계되는 소정의 가상계좌 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가상계좌 원장에 상기 생성된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62> 원장D/B(200)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에 따른 가상계좌 원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 <63>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에서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구비된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연계 처리되는 가상계좌 원장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원장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 <64>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상기 제1고객 명의로 개설되며 상기 제2고객이 사용할 가상계좌에 대응하는 가상계좌 원장은,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연계 처리되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은 상기 제1고객에 대응하는 소정의 고객원장과 연계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6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2에서 상기 고객원장은 상기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제1고객에 대응하는 원장으로서,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번호, 국가코드, 담당자ID, 영업점번호, 고객분류, 고객이름, 고객주소, 지역구분코드, 전화번호, 사업장번호, 상호, 분류코드, 유효기일, 상태본점정보, 결산일, 현금가용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우송장소, 구좌번호, 사장, 업종, 법정대리인, 최초거래일, TRW, DB, 사용한도, 모회사번호, 국명, 전송, 성별거주자, 직업, 우송주소, 회사명, 후견인명, 후견인전화번호, 법정대리인사업자번호, 건공정구분, 세금구분, 지역코드, 그룹코드 및 우편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66>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67> 또한, 본 도면2에서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은 상기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계좌번호, CIF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상태, 상품종류, 이율, 비밀번호, 잔액, 타점권잔액1, 타점권잔액2,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급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원장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기권(월수), 기간(일수), 기간연장, 만기일 및 목표액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기성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수탁금액, 액면금액, 연금일 및 주식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탁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거래번호, 일자, 점번, 상품종류, 거래종류, 현금액, 타점권, 배치번호(Batch No.), 복합거래, 기산일, 통장라인, 적요, CIF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68>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는 상기 계좌원장 정보와, 상기 계좌원장과 연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 구성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69>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가상계좌 원장은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정보와,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D/B(200)에 구비된 계좌원장에 포함되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7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외에 상기 계좌원장과 유사하게 소정의 가상계좌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가상계좌상태, 가상계좌종류, 가상계좌이율, 가상계좌비밀번호,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급이자, 시간연장잔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과 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71>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술된 가상계좌 원장 정보 이외에 상기 가상계좌 원장에 포함되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 구성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72> 도면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73>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에서 소정의 고객이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예컨대, 가상계좌 개설신청서와 청구단말과 금융망)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로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에서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가상계좌 개설 고객(예컨대,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상기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74> 이하, 본 도면3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청구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1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 <75> 도면3을 참조하면, 제2고객이 사용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제1고객은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상기 작성된 가상계좌 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상기 단말은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서에 포함된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제공한다(300).
- <76> 여기서, 상기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1고객이 작성하는 가상계좌 개설신청서와 상기 금융기관 직원이 이용하는 청구단말 및 상기 청구단말과 상기 서버를 연결하는 금융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77>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고객정보(예컨대, 제1고객 정보)와,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정보(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와, 상기 가상계좌 사용 고객정보(예컨대,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제2고객 정보)와, 상기 가상계좌별 사용한다 정보와, 가상계좌별 금액 충전정보(예컨대, 잔고없음 또는 잔고부족시 자동으로 모계좌로부터 충전, 가상계좌 사용한다 초과시 자동으로 모계좌로부터 충전 등)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78> 상기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관독함으로써, 상기 제1고객에게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305).
- <79> 여기서, 상기 가상계좌 개설 유효성 확인은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계좌가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실계좌로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80> 만약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상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으면(310), 상기 서버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1고객에게 가상계좌 개설 오류 정보를 제공하고(315), 상기 제1고객의 요청에 따른 상기 가상계좌 개설 과정을 중지한다.

- <81> 반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통해 상기 제1고객에게 상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유효성이 인증되면(310), 상기 서버는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제2고객이 사용할 가상계좌에 대응하는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생성한다(320).
- <82> 여기서,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정보와,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D/B(200)에 구비된 계좌원장에 포함되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 구성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83>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 상에 구비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계좌원장 중 상기 제1고객에 의해 개설되는 가상계좌와 연계될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확인한다(325).
- <84> 만약, 상기 개설될 가상계좌와 연계될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이 확인되면(330),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 상에 구비되어 있는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연계 처리되는 상기 가상계좌 원장을 생성하고(335),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200)에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연계 처리되어 생성된 가상계좌 원장에 상기 생성된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저장한다(340).
- <8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에 포함된 제2고객 정보에 제2고객 고유 정보(예컨대, 성명, 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메일주소 등)가 포함된 경우, 상기 가상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상기와 같이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와 연계되는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상기 제1고객에게 상기 금융기관 창구에 방문하여(또는 상기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CD(Cash Dispenser)/ATM(Automatic Teller Machine)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가상계좌 비밀번호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86> 또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에 포함된 제2고객 고유 정보(예컨대, 성명, 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메일주소 등)가 포함된 경우, 상기 가상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상기와 같이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와 연계되는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상기 제2고객에게 상기 금융기관 창구에 방문하여(또는 상기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CD(Cash Dispenser)/ATM(Automatic Teller Machine)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통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가상계좌 비밀번호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87> 도면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 <88>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는 상기 제1고객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을 포함하는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에서 상기 제1고객의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계좌 또는 신용카드 연계 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상기 제1고객이 비대면 금융거래 채널에 대응하는 소정의 단말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제공하면,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에서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제1고객 명의로의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 <89>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90> 이하, 본 도면4에 도시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1고객으로부터 제공되는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제1고객이 지정(또는 선택)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고객이 사용할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라고 한다.

- <9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4를 참조하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은, 상기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이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경우, 상기 제1고객이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 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로 전송하는 단말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단말은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된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와 통신채널이 연결된다.
- <92>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이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경우, 상기 제1고객은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유선 단말 및/또는 소정의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단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에 접속하고,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가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면,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된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3> 여기서, 상기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유선 단말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기반의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데스크탑(Desktop) 컴퓨터 및/또는 노트북(Notebook), 또는 상기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가전단말(예컨대, 셋탑박스(Set-Top-Box) 등), 또는 TCP/IP 기반 통신망에 연결된 키오스크(KIOSK)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94> 또한,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무선 단말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 및/또는 Motorola사의 DataTAC 방식 및/또는 Erricson사의 Mobitex 방식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장치의 총칭으로서, 상기 CDMA 기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개인 통신 단말기(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PCS) 및/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단말기 및/또는 개인 디지털 셀룰러 단말기(Personal Digital Cellular; PDC) 및/또는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단말기 및/또는 개인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및/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및/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또는 상기 IEEE 802.16x 기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 인터넷 단말, 또는 상기 DataTAC/ Mobitex 기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 데이터 통신 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95> 또한, 상기 단말은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에서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입력 및/또는 선택하여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 구성(예컨대, 브라우저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또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와 통신하는 소정의 통신 프로그램과 통신 기능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96>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에 대응하는 상기 단말의 특징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97> 상기와 같은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고객이 이용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단말과, 상기 단말과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를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는 상기 제1고객이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다.
- <98>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이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 이외에,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금융공동망)에 연결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utomatic Teller Machine; ATM), 현금 자동 지급기(Cash Dispenser; CD)를 포함하는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소정의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VoIP(Voice over IP)망과 같은 유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이동통신망, 무선 VoIP망과 같은 무선전화망에 연결된 소정의 통화단말(도시생략)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 및/또는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관에 구비된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99> 상기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 및 상기 금융자동화기기(도시생략)와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

(400)를 연결하는 금융망은 상기 제1고객이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및/또는 상기 단말이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 및 상기 통화단말(도시생략)과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를 연결하는 유선전화망 및/또는 무선전화망은 상기 제1고객이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며, 및/또는 상기 단말인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기관에 구비된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인 경우, 상기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 및 상기 단말(및/또는 서버)(도시생략)과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상기 제1고객이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 <100> 상기 제1고객의 요청에 의해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금융기관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예컨대, 여신, 수신, 외환, 금융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정의 금융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01>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금융기관의 지점(및/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창구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당행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창구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2>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상기 금융기관의 지점(및/또는 영업점)에 구비된 CD/ATM(Cash Dispenser/ Automatic Teller Machine)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 및/또는 상기 금융기관과 제휴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및/또는 다른 금융기관 지점)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 및/또는 공공의 장소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단말과 소정의 금융망(예컨대, CD공동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 대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3>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인터넷 बैं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인터넷 बैं킹 서버를 통해 TCP/IP 기반 백분망에 연결된 네트워크(예컨대, 유선 인터넷, 및/또는 IEEE 802.11x 기반 무선랜,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등)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단말(예컨대, 상기 유선 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및/또는 노트북, 상기 무선랜/휴대인터넷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노트북 및/또는 휴대단말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4>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무선 बैं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무선 बैं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및/또는 DataTAC/ 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상기 이동통신망에 접속 및 브라우징 기능이 구비된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및/또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단말 및/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및/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 및/또는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5>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IC칩 기반 무선 बैं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IC칩 기반 무선 बैं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무선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 및/또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 및/또는 DataTAC/ Mobitex 방식 기반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예컨대, 금융IC칩이 탑재된 무선 단말)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IC칩 기반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6>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텔레뱅크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텔레뱅크 서버를 통해 소정의 유선 음성통화망(예컨대,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선 통화단말(예컨대, 전화기), 및/또는 소정의 무선 음성통화망(예컨대,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통화단말(예컨대, PCS 및/또는 GSM 단

말 및/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07>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홈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홈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전기기(예컨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지털TV 및/또는 냉장고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08> 또한, 상기 금융 시스템은 소정의 TV 뱅킹 서버와 연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TV 뱅킹 서버를 통해 소정의 리턴채널(Return Channel)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지털TV(예컨대, 양방향 디지털TV, 위성 DMB 단말, 지상파 DMB 단말 등)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기 금융거래 서비스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09> 도면4를 참조하면, 상기 금융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구비되는 전산 시스템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업점(또는 창구)에서 발생하는 여신 또는 수신 또는 신탁 또는 외국환과 같은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계정계와, 본부업무의 처리와 영업점 정보지원 및 고객정보 관리를 처리하는 정보계와, 상기 금융시스템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금융시스템(및/또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접속,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 통신망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단(예컨대, 인터넷 뱅킹, 무선 뱅킹, IC칩 기반 무선 뱅킹, 텔레 뱅킹, TV 뱅킹 등)에서 상기 금융시스템으로 접근,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동망(예컨대, CD공동망, 금융공동망)을 통한 다양한 금융거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대외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상기 금융 시스템 내 구성 요소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미들웨어(Middleware) 플랫폼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모듈과, 상기 금융 시스템 내 구성요소에서 각각의 기능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정보(예컨대, 원장 정보, 및/또는 고객 정보, 및/또는 경영 정보 등)를 저장 및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10> 또한, 상기 금융시스템은 당업자의 의도 및/또는 상기 금융시스템이 구비되는 각 금융기관의 종류(예컨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탁은행)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외국환계 모듈(도시생략), 투자금융계 모듈(도시생략), 국제계 모듈(도시생략)과 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가 더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금융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111>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금융시스템에 구비된 상기 DBMS는 상기 금융기관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고객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상기 금융계좌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을 저장하는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는 상기 금융기관이 상기 금융거래 고객에게 제공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처리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예컨대, 고객원장, 수신원장, 담보원장 등)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예컨대, 각 원장의 속성/기능을 보다 구체화 및/또는 보완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가 관계형(Relationship)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12>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각 금융기관의 종류와 상기 금융시스템의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와, 각 원장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를 기 숙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원장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원장정보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부가정보가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어 저장되는 것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113>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는 상기 제1고객이 이용하는 단말과 소정의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 측 구성요소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여 구현되거나, 및/또는 소정의 서버(또는 장치)에 구비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114>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는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단말로 소정

의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4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1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이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405)는 상기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16> 예컨대, 상기 단말에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4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저 프로그램에 정의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117> 또는, 상기 단말에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에서 제공한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405)는 상기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118>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제1고객이 이용하는 단말이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405)는 상기 무선 네트워크에 정의된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상기 단말과 소정의 통신 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단말에 구비된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19> 예컨대, 상기 단말에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및/또는 ME(Mobile Explorer)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4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브라우저 프로그램에 정의된 WAP/M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웹페이지(예컨대, WML(Wireless Markup Language) 호환 웹페이지, 또는 HTML 호환 웹페이지) 및/또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120> 또는, 상기 단말에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에서 제공한 가상계좌 개설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부(405)는 상기 CDM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단말과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정보(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121> 도면4를 참조하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는 상기 제1고객이 이용하는 단말이 상기 인터페이스부(405)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에 접속시, 상기 인터페이스부(405)와 연동하여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단말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410)와, 상기 인터페이스부(405)와 연동하여 상기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는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415)와, 상기 수신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고객에게 개설할 가상계좌에 대응하는 소정의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420)와,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상기 모계좌에 대응하는 금융계좌의 계좌원장과 연계하여 상기 생성된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 저장부(42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22>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410)는 소정의 제1고객이 이용하는 단말이 상기 인터페이스부(405)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에 접속시, 상기 단말에 구비된 기능구성에 대응하여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로 전송할 수 있는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데이터베이스(도시생략)로부터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405)와 연동하여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단말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23>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며, 상기 입력(또는 선택)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로 전송한다.
- <124>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이 소정의 유선 네트워크 및/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유선 단말 및/또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410)는 상기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저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

(4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5>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단말이 소정의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410)는 상기 단말에 구비된 브라우저 프로그램 및/또는 통신 프로그램으로 제공 가능한 소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부(405)를 통해 상기 생성(또는 추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단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6> 상기 정보 수신부(415)는 상기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여 상기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전송하면, 상기 인터페이스부(405)와 연동하여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수신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상기 정보 생성부(420)로 제공한다.
- <127>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고객정보(예컨대, 제1고객 정보)와,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정보(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와, 상기 가상계좌 사용 고객정보(예컨대,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제2고객 정보)와, 상기 가상계좌별 사용한도 정보와, 가상계좌별 금액 충전정보(예컨대, 잔고없음 또는 잔고부족시 자동으로 모계좌로부터 충전, 가상계좌 사용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모계좌로부터 충전 등)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8>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415)는 상기 수신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9> 여기서, 상기 가상계좌 개설 유효성 확인은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모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금융계좌가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에 실계좌로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30> 상기 정보 생성부(420)는 상기 정보 수신부(415)를 통해 수신된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근거로 상기 제1고객 명의로 개설되는 상기 가상계좌에 구비될 소정의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정보와,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D/B에 구비된 계좌원장에 포함되어야 할를 처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31>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 구성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132> 상기 정보 생성부(420)에 의해 상기 가상계좌에 포함될 소정의 가상계좌 원장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정보 저장부(425)는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D/B에 구비된 상기 모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연계되는 소정의 가상계좌 원장을 생성하고, 상기 가상계좌 원장에 상기 생성된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33> 도면5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에 따른 가상계좌 원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 <134>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상기 도면4에 도시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에서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500)에 구비된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연계 처리되는 가상계좌 원장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제2고객용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원장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 <135>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상기 제1고객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계좌에 대응하는 가상계좌 원장은,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연계 처리되어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500)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은 상기 제1고객에 대응하는 소정의 고객원장과 연계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36>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5에서 상기 고객원장은 상기 제1고객에 대응하는 원장으로서, CIF(Customer Information File)번호, 국가코드, 담당자ID, 영업점번호, 고객분류, 고객이름, 고객주소, 지역구분코드, 전화번호, 사업장번호, 상호, 분류코드, 유효기일, 상태본점정보, 결산일, 현금가용일, 성, 명, 주민

등록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우송장소, 구좌번호, 사장, 업종, 법정대리인, 최초거래일, TRW, DB, 사용  
 한도, 모회사번호. 국명, 전송, 성별거주자, 직업, 우송주소, 회사명, 후견인명, 후견인전화번호, 법정대리인사  
 업자번호, 건공정구분, 세금구분, 지역코드, 그룹코드 및 우편번호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37>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고객원장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  
 백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138> 또한, 본 도면5에서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  
 원장은 상기 고객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되며, 계좌번호, CIF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상태, 상품종류, 이율,  
 비밀번호, 잔액, 타점권잔액1, 타점권잔액2,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금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통연결여부, 최  
 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계좌원장 정  
 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기권(월수), 기간(일수), 기간연장, 만기일 및  
 목표액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정기성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수탁금액,  
 액면금액, 연금일 및 주식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신탁 수신정보, 및/또는 상기 계좌원장에 대응하는  
 계좌번호, 거래번호, 일자, 점번, 상품종류, 거래종류, 현금액, 타점권, 배치번호(Batch No.), 복합거래, 기산  
 일, 통장라인, 적요, CIF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거래내역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139>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는 상기 계좌원장 정보와,  
 상기 계좌원장과 연계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가정보 구성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특징을 명백하게 이해하  
 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140>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가상계좌 원장은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관계형으로 연계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는 상기 가  
 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정보와,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D/B(500)에 구비된 계좌원장에 포함되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4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외에 상기 계좌원장과 유사하게 소정의 가상계좌번호, 점번, 통화, 개설일, 가상계좌상태, 가상  
 계좌종류, 가상계좌이율, 가상계좌비밀번호, 가상계좌예치금, 통장잔액, 통장번호, 미지금이자, 시간연장건수,  
 시간연장금액, ARS설정, 최종입금일, 최종출금일, 최종입금액, 최종출금액, 무통장거래건수, 이자이체계좌, 평  
 통연결여부, 최종지급이자, 최종지급거래번호, 개별이율참조 및 최종이자계산일 등과 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142>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술된 가상계좌 원장 정보 이외에 상기 가상계좌 원  
 장에 포함되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 구성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143> 도면6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  
 한 도면이다.
- <144>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은 상기 도면4에 도시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에서 소정의 고객(제1고객)이 소정의 가상  
 계좌 개설 인터페이스(예컨대, 또는 유선단말 및/또는 무선단말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단말과 네트워크  
 수단 등)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로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에서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소정의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  
 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상기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6에 도시된 실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145> 이하, 본 도면6에서 상기 도면4에 도시된 제1고객이 이용하는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가상계좌  
 개설 서버(400)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 <146>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상기 제1고객에게 가상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제1고객은 상기 단말을 이용하여 상기 네  
 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하고, 상기 서버로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  
 를 요청하고(6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추출(또

는 생성)하여 상기 단말로 제공한다(605).

- <147>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410)를 통해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 입력(또는 선택)한 후,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제공한다(610).
- <148> 여기서, 상기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410)는 상기 제1고객이 이용하는 소정의 단말과, 상기 단말과 상기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수단 및 상기 서버에서 상기 단말에서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49>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고객정보(예컨대, 제1 고객 정보)와,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정보(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와, 상기 가상계좌 사용 고객정보(예컨대, 무선단말 정보를 포함하는 제2고객 정보)와, 상기 가상계좌별 사용한다 정보와, 가상계좌별 금액 충전정보(예컨대, 잔고없음 또는 잔고부족시 자동으로 모계좌로부터 충전, 가상계좌 사용한다 초과시 자동으로 모계좌로부터 충전 등)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50> 상기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판독함으로써, 상기 고객에게 상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615).
- <151> 여기서, 상기 가상계좌 개설 유효성 확인은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에 포함된 상기 모계좌 정보(예컨대,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에 대응하는 금융계좌가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500)에 실제좌로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52> 만약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상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620), 상기 서버는 상기 가상계좌 개설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가상계좌 개설 오류 정보를 제공하고(625), 상기 고객에게 상기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중지한다.
- <153> 반면 상기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통해 상기 고객에게 상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유효성이 입증되면(620), 상기 서버는 가상계좌 개설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개설할 가상계좌에 대응하는 상기 제1고객 명의의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생성한다(630).
- <154> 여기서, 상기 가상계좌 원장 정보는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모계좌 정보와,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된 원장D/B(500)에 구비된 계좌원장에 포함되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55>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계좌원장에 포함되어야 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 구성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한다.
- <156>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500) 상에 구비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계좌원장 중 상기 개설될 가상계좌와 연계될 모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을 확인한다(635).
- <157> 만약 상기 개설될 가상계좌와 연계될 모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이 확인되면(640), 상기 서버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500) 상에 구비되어 있는 상기 모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연계 처리되는 상기 가상계좌 원장을 생성하고(645),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500)에 상기 모계좌에 대응하는 계좌원장과 연계 처리되어 생성된 가상계좌 원장에 상기 생성된 가상계좌 원장 정보를 저장한다(650).
- <158> 도면7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가상계좌 운용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 <159>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7은 상기 도면1 또는 도면3에 도시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마이너스 계좌 또는 신용카드 연계 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상기 개설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를 운용하기 위한 가상계좌 운용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 운용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7에 도시된 실시 방법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 <160> 이하,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서 소정의 금융거래 단말과 연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 운용을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단 및/또는 기능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편의상 "가상계좌 운용 서버"라고 한다.

- <161> 상기 가상계좌 운용 시스템은 상기 금융기관의 각 지점 창구직원이 이용하는 창구단말, 및/또는 상기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CD/ATM, 및/또는 고객이 이용하는 소정의 IC카드 리더가 구비된 유선단말(도시생략) 및/또는 무선단말(도시생략)과 및/또는 가전단말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금융거래 단말과, 상기 금융거래 단말과 소정의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 금융기관의 금융시스템과 연동하거나 또는 상기 금융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가상계좌 운용 서버와, 상기 고객에게 개설된 금융계좌(모계좌 및 가상계좌)에 대응하는 원장정보가 저장되는 원장D/B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162>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에 도시된 상기 가상계좌 운용 서버가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금융시스템의 외부에서 상기 금융시스템과 연계되는 소정의 온라인 banking 서버(예컨대, 인터넷 banking 서버, 무선 banking 서버, 홈 banking 서버 등)이어도 무방함을 명백하게 이해할 것이며, 본 도면7에 도시된 가상계좌 운용 서버는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임을 명기한다.
- <163> 상기 금융거래 단말은 본 발명에 따라 상기 도면1 또는 도면3의 계좌개설 시스템을 통해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를 개설한 제1고객이 상기 모계좌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로 이체시키기 위한 단말로서, 창구단말, 상기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CD/ATM, 제1고객이 이용하는 소정의 IC카드 리더가 구비된 유선단말(도시생략) 및/또는 무선단말(도시생략)과 및/또는 가전단말(도시생략)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64>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금융거래 단말은 상기 제1고객의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의 모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또는 신용카드 연계계좌 등)와 연계되는 결제수단(예컨대, 실물통장 또는 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기 제1고객으로부터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 금액 충전(또는 이체)을 위한 소정의 금융거래가 요청되면,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정보 및 결제수단 정보를 상기 통신망(또는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운용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65> 여기서,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의 모계좌가 마이너스 계좌인 경우, 상기 제1고객은 상기 마이너스 계좌 한도 및 상기 도면1 또는 도면2의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설정된 상기 가상계좌 한도 내에서 상기 모계좌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 <166> 또한,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의 모계좌가 신용카드와 연계되는 계좌인 경우, 상기 제1고객은 상기 신용카드 한도 및 상기 도면1 또는 도면2의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설정된 상기 가상계좌 한도 내에서 상기 모계좌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 <167> 도면7을 참조하면, 상기 가상계좌 운용 서버는 소정의 통신망(또는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단말과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 운용 및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 금액 충전(또는 이체)을 위한 소정의 금융거래를 위한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부(705)와, 상기 인터페이스부(705)를 통해 상기 금융거래 단말로부터 상기 모계좌와 연결되는 금융거래 수단 정보, 가상계좌 정보 및 금융거래 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요청 전문을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710)와, 상기 정보 수신부(710)를 통해 수신된 금융거래 요청 전문에 포함된 상기 금융거래 수단 정보 및 가상계좌 정보를 근거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와 연계하여, 상기 금융거래 수단 정보 및 가상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원장 정보를 추출(또는 확인)하고, 상기 추출(또는 확인)된 원장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확인하는 정보 확인부(720)와, 상기 확인결과,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의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한 경우,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금융 거래부(725)와, 상기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 처리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인터페이스부(705)를 통해 상기 생성된 금융거래 처리 전문을 상기 금융거래 단말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71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68> 또한,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가상계좌 운용 서버는,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 정보에 포함된 가상계좌별 금액 충전정보(예컨대, 잔고없음 또는 잔고부족시 자동으로 모계좌로부터 충전, 가상계좌 사용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모계좌로부터 충전 등)를 확인하고, 상기 가상계좌 잔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상기 가상계좌의 잔고 부족이나, 잔고 없음시, 상기 제1고객이 기 설정한 소정의 가상계좌 한도금액에 따라 상기 모계좌로부터 상기 가상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자동으로 이체처리하는 가상계좌 관리부(730)와, 상기 가상계좌 관리부(730)를 통해 상기 모계좌로부터 상기 가상계좌로 소정의 금액 이체처리가 수행되면, 상기 이체처리 내역을 상기 제1고객 통신수단(예컨대, 무선 단말 등)으로 통지하는 통지부(735)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 <169> 상기 인터페이스부(705)는 소정의 통신망(또는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단말과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 운용 및 상기 개설된 가상계좌 금액 충전(또는 이체)을 위한 소정의 금융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소정의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70> 상기 인터페이스부(705)에 의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단말과 연결 및 관리되는 통신채널은 상기 금융기관에 구비된 금융시스템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 단말 사이에 전용 통신망(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연결된 통신채널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금융거래 단말이 창구단말 또는 상기 CD/ATM인 경우, 상기 금융거래 단말과 상기 가상계좌 운용 서버 사이에 정의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업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문을 송수신하기 위한 트랜잭션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트랜잭션 프로토콜(및/또는 트랜잭션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전문 구조)은 각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업무 종류와 상기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플랫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시스템에서 채택한 트랜잭션 프로토콜(및/또는 트랜잭션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전문 구조)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171>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 채널에 대응하는 트랜잭션 프로토콜(및/또는 트랜잭션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전문 구조)은 보다 고도한 보안성을 제공하기 위해 암호화 전문 송수신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172>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 채널에 대응하는 트랜잭션 프로토콜은 전문 이외에 바이너리 데이터로 이루어진 트래픽 데이터 방식으로 정의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173> 상기 정보 수신부(71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705)를 통해 상기 금융거래 단말로부터 소정의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업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전문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전문 구조를 근거로 상기 수신된 전문을 판독하고, 상기 판독된 전문으로부터 각각의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업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74>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되는 전문은 상기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업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이외에, 상기 금융거래 단말에 대응하는 금융거래 단말 주소 정보 및/또는 상기 금융거래 단말 ID 정보 및/또는 상기 금융거래 단말 관리자(또는 운용자) 정보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75>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71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705)를 통해 상기 금융거래 단말로부터 소정의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업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트래픽 데이터의 헤더를 판독하여 각각의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업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 <176> 상기 정보 수신부(710)가 상기 인터페이스부(705)를 통해 소정의 금융거래 단말로부터 상기 모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또는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와 연결되는 금융거래 수단 정보, 가상계좌 정보 및 금융거래 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요청 전문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710)는 상기 금융거래 요청 전문으로부터 상기 금융거래 수단 정보, 가상계좌 정보 및 금융거래 금액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정보 확인부(720)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77> 상기 정보 확인부(720)는 상기 정보 수신부(710)를 통해 수신된 상기 금융거래 요청 전문에 포함된 상기 금융거래 수단 정보 및 가상계좌 정보를 근거로 상기 금융시스템 상의 원장D/B와 연계하여, 상기 금융거래 수단 정보 및 가상계좌 정보에 대응하는 원장 정보를 추출(또는 확인)하고, 상기 추출(또는 확인)된 원장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78>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정보 확인부(720)는, 상기 추출(또는 확인)된 원장 정보를 근거로, 상기 금융거래 요청 금액(예컨대, 모계좌로부터 가상계좌로 이체할 금액 등)이 상기 모계좌의 사용한도(예컨대, 모계좌가 마이너스 계좌인 경우, 마이너스 계좌한도, 모계좌가 신용카드 연계 계좌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79> 또한,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정보 확인부(720)는, 상기 추출(또는 확인)된 원장 정보를 근거로, 상기 금융거래 요청 금액(예컨대, 모계좌로부터 가상계좌로 이체할 금액 등)이 상기 가상계좌의 사용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80> 상기 금융 거래부(725)는, 상기 정보 확인부(720)를 통해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예컨대, 상기 모계좌로부터 상기 가상계좌로 소정의 금액 이체 거래 등)가 정상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확인되면,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를 처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81> 상기 정보 전송부(715)는, 상기 금융 거래부(725)를 통해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가 처리되면, 상기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 처리 전문을 생성하여 상기 인터페이스부(705)를 통해 상기 생성된 금융거래 처리 전문을 상기 금융거래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82> 도면8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가상계좌 운용시 금융거래 단말의 동작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183>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8은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도면1 또는 도면3의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제1고객의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상기 모계좌로부터 상기 가상계좌로의 소정의 금액이체(충전)를 위해, 상기 모계좌와 연계되는 실물통장 또는 카드를 상기 도면7에 도시된 금융거래 단말에 삽입 또는 리딩한 후, 상기 금융거래 단말에서 소정의 금융거래(예컨대, 상기 모계좌로부터 상기 가상계좌로의 소정의 금액이체(충전) 등)를 개시하는 과정에 대한 실시 방법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8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금융거래 단말에서 상기 모계좌로부터 상기 가상계좌로의 소정의 금액이체(충전) 등을 포함하는 금융거래를 개시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8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184> 이하, 본 도면8에서 상기 금융거래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한다.
- <185> 도면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기능이 구비된 단말은 소정의 리더부를 통해 소정의 고객 통장(또는 카드)이 리딩되는지 확인하는데(800), 만약 상기 리더부를 통해 소정의 통장(또는 카드)이 리딩되면(805), 상기 단말은 소정의 동작모드 선택 인터페이스 화면을 출력하고, 상기 동작모드 선택 인터페이스 화면을 통해 상기 단말의 동작모드가 상기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모드가 선택되는지 확인한다(810).
- <186> 여기서, 상기 통장(또는 카드)은 본 발명에 따라 상기 도면1 또는 도면3에 도시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개설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의 모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연계되는 실물 통장(또는 카드)인 것이 바람직하다.
- <187> 만약 상기 단말의 동작모드가 소정의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를 위한 상기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모드로 선택되지 않으면(815), 상기 단말은 상기 통장(또는 카드)을 기반으로 상기 선택된 동작모드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420).
- <188> 반면 상기 단말의 동작모드가 소정의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를 위한 상기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모드로 선택되면(815), 상기 단말은 소정의 비밀번호(또는 PIN)를 이용하는 유효성 인증 인터페이스 화면(예컨대, 소정의 비밀번호(또는 PIN)를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화면)을 출력하고, 상기 유효성 인증 인터페이스 화면을 통해 소정의 비밀번호(또는 PIN)가 입력되어 상기 금융수단(또는 결제수단)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는지 확인한다(825).
- <189> 만약 상기 리딩된 통장(또는 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830), 상기 단말은 소정의 유효성 인증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835), 상기 통장(또는 카드)을 이용한 금융거래(또는 전자결제) 절차를 종료한다.
- <190> 반면 상기 리딩된 통장(또는 카드)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830), 상기 단말은 상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상기 단말에서 수행할 소정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 화면을 출력하고(840), 상기 고객으로부터 상기 단말에서 수행할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입력 여부를 확인한다(845).
- <191>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입력은, 상기 통장(또는 카드)을 이용한 금융거래 정보(예컨대,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와, 상기 통장(또는 카드)과 연계되는 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는 가상계좌 정보 및 상기 가상계좌로 이체할 금액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192> 상기와 같은 금융거래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850), 상기 단말은 상기 금융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요청 전문을 생성하고(855), 상기 통신망(또는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생성된 금융거래 요청 전문을 가상계좌 관리서버로 전송한다(860).
- <193> 도면9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가상계좌 운용시 가상계좌 운용 서버의 동작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194>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9는 상기 도면8과 같은 과정을 통해 상기 금융거래 단말로부터 소정의 금융거래 요청 전문을 수신한 원장 서버(700)에서, 상기 금융거래 요청 전문에 포함된 상기 모계좌(상기 실물 통장 또는 카드에 대응하는 계좌) 정보 및 가상계좌 정보 및 요청된 금융거래 정보(예컨대, 마이너스 계좌로부터 가상계좌로 소정

의 금액이체 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을 가상계좌로 이체 등)를 추출하여, 상기 추출된 모계좌 및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원장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원장 정보를 근거로,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의 처리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를 처리하도록 하는 실시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9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모계좌 및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소정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9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195> 이하, 본 도면에서 상기 금융거래 단말을 편의상 "단말"이라고 하고, 상기 가상계좌 운용 서버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 <196> 도면9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가상계좌 운용 기능이 구비된 가상계좌 운용 서버는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로부터 상기 금융거래 요청 전문이 수신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900), 만약 소정의 단말로부터 상기 금융거래 요청 전문이 수신되면(905),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금융거래 요청 전문을 판독하여 상기 금융거래 요청 전문에 포함된 금융거래 요청 통장(또는 카드) 정보와, 금융거래 대상 가상계좌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추출하고(910), 상기 추출된 금융거래 요청 통장(또는 카드) 정보와, 금융거래 대상 가상계좌 정보를 근거로 상기 원장D/B를 검색함으로써, 상기 원장D/B로부터 상기 추출된 금융거래 요청 통장(또는 카드) 정보와, 금융거래 대상 가상계좌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정보를 검색한다(915).
- <197> 만약 상기 원장D/B로부터 상기 추출된 금융거래 요청 통장(또는 카드) 정보와, 금융거래 대상 가상계좌 정보와 매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원장 정보가 검색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원장 정보를 근거로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의 처리가 가능한지 판단한다(920).
- <198>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서버는, 상기 추출(또는 확인)된 원장 정보를 근거로, 상기 금융거래 요청 금액(예컨대, 모계좌로부터 가상계좌로 이체할 금액 등)이 상기 모계좌의 사용한도(예컨대, 모계좌가 마이너스 계좌인 경우, 마이너스 계좌한도, 모계좌가 신용카드 연계 계좌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 <199> 또한,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추출(또는 확인)된 원장 정보를 근거로, 상기 금융거래 요청 금액(예컨대, 모계좌로부터 가상계좌로 이체할 금액 등)이 상기 가상계좌의 사용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 <200> 만약, 상기 판단결과, 상기 단말로부터 요청된 금융거래의 처리가 가능하다면(925), 상기 서버는 상기 요청된 금융거래를 처리하고(예컨대, 모계좌가 마이너스 계좌인 경우, 마이너스 계좌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상기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모계좌가 신용카드 연계 계좌인 경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금액을 상기 가상계좌로 이체 등)(930), 상기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포함하는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생성한다(935).
- <201> 그리고,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상기 원장D/B의 계좌원장에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고(940), 상기 생성된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처리 전문을 생성하여(945), 상기 생성된 금융거래 처리 전문을 상기 통신망(또는 네트워크 수단)을 통해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950).
- <202>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금융거래 처리 전문을 수신 및 판독하여(955), 상기 판독된 금융거래 처리 내역을 출력한다(960).
- <203> 도면10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가상계좌 운용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204>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0은 상기 도면1 또는 도면3에 도시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요청 고객이 소유한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여 개설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에 대하여 기 설정한 가상계좌 금액 자동이체(또는 충전) 정보에 따라 상기 가상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자동이체(또는 충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실시 방법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0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기 설정한 가상계좌 금액 자동이체(또는 충전) 정보에 따라 상기 가상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자동이체(또는 충전) 처리하는 다양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실시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본 도면10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 <205> 이하, 본 도면에서 상기 가상계좌 운용 서버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 <206> 도면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서버는 상기 도면1 또는 도면3에 도시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상기

가상계좌 개설 요청 고객이 소유한 특정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모계좌로 하여 개설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 잔고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1000).

- <207> 만약, 상기 가상계좌의 잔고가 부족 또는 잔고없음의 상태인 경우(1005), 상기 서버는 상기 도면1 또는 도면3에 도시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원장D/B에 저장된 상기 가상계좌 원장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가상계좌와 연계되는 가상계좌 금액 자동이체(또는 충전) 정보를 확인한다(1010).
- <208>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가상계좌 금액 자동이체(또는 충전) 정보 확인을 통해, 기 설정된 자동이체(또는 충전) 금액(한도) 정보, 횟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209> 그리고, 상기 서버는, 상기 가상계좌의 모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를 조회하여, 상기 확인된 자동이체(또는 충전) 금액의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데(1015), 여기서, 상기 가상계좌의 모계좌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이므로, 상기 인출되는 금액은 상기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 또는 신용카드의 한도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 <210> 예컨대, 상기 인출되기로 설정된 금액이 상기 마이너스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한다면, 본 실시예에 따른 가상계좌 금액 자동이체(또는 충전) 과정은 종료되거나, 또는 기 설정된 자동이체(또는 충전) 금액(한도)의 일부만이 자동이체(또는 충전)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11> 만약, 상기 가상계좌의 모계좌(예컨대, 마이너스 계좌, 신용카드 연계 계좌 등) 조회결과, 상기 확인된 자동이체(또는 충전) 금액의 인출이 가능하다면(1020), 상기 서버는 상기 모계좌로부터 상기 가상계좌로 상기 설정된 자동이체(또는 충전) 금액(한도)을 이체(또는 충전)처리하고(1025), 상기 이체처리 결과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내역 정보를 생성한다(1030).
- <212> 또한,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금융거래 처리 내역 정보를 상기 원장D/B의 계좌원장에 연계 처리하여 저장하고(1035), 상기 모계좌 고객의 통신수단 정보(예컨대, 핸드폰 번호 등)를 확인하여(1040), 상기 확인된 고객 통신수단으로 상기 금융거래 내역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이체처리 결과를 통지한다(1045).

**발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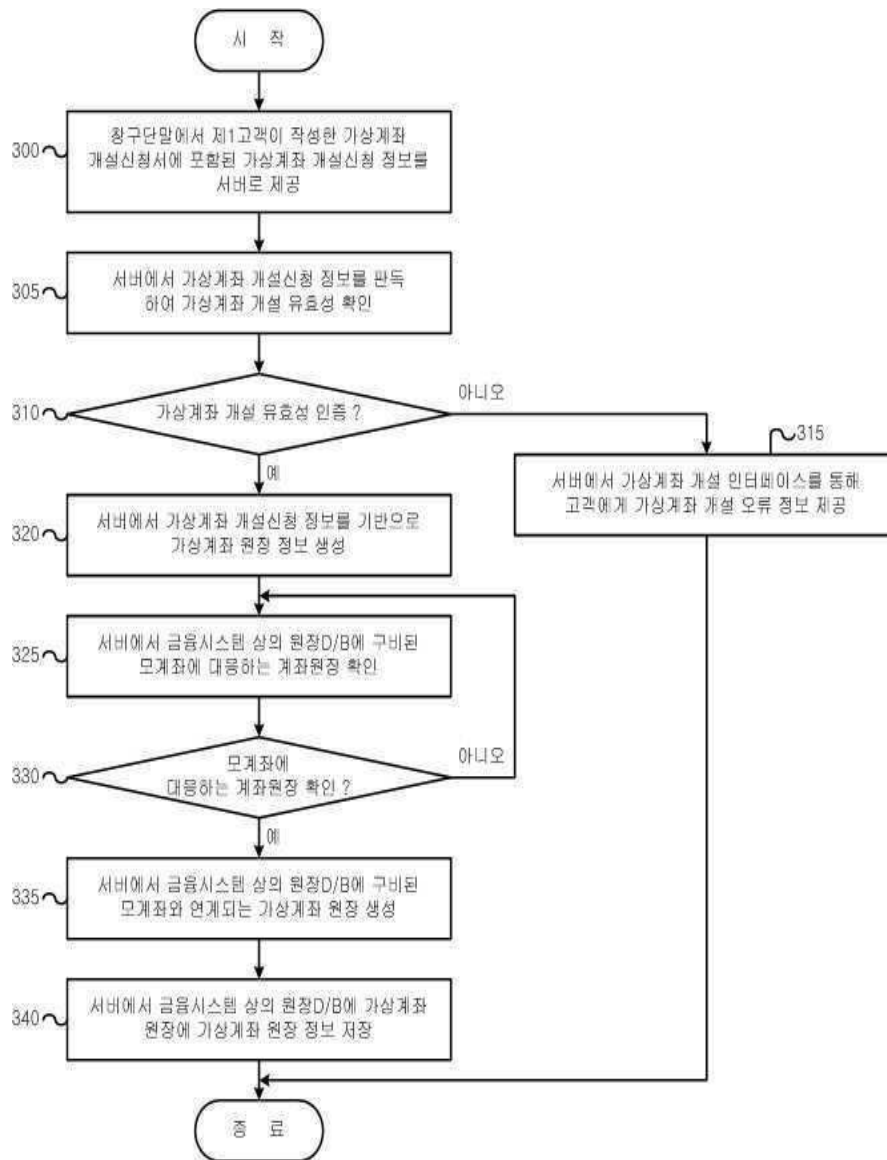
- <213> 본 발명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에게 하나 이상의 가상계좌를 할당하고, 가족 대표의 신용한도를 확인하여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여, 상기 확인된 대출(또는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을 이용하여, 상기 가족 구성원에게 할당된 가상계좌에 소정의 금액을 충전시키도록 함으로서, 미래의 잠재 고객(자녀 등)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14> 또한, 신규 서비스 개발로 인해, 타사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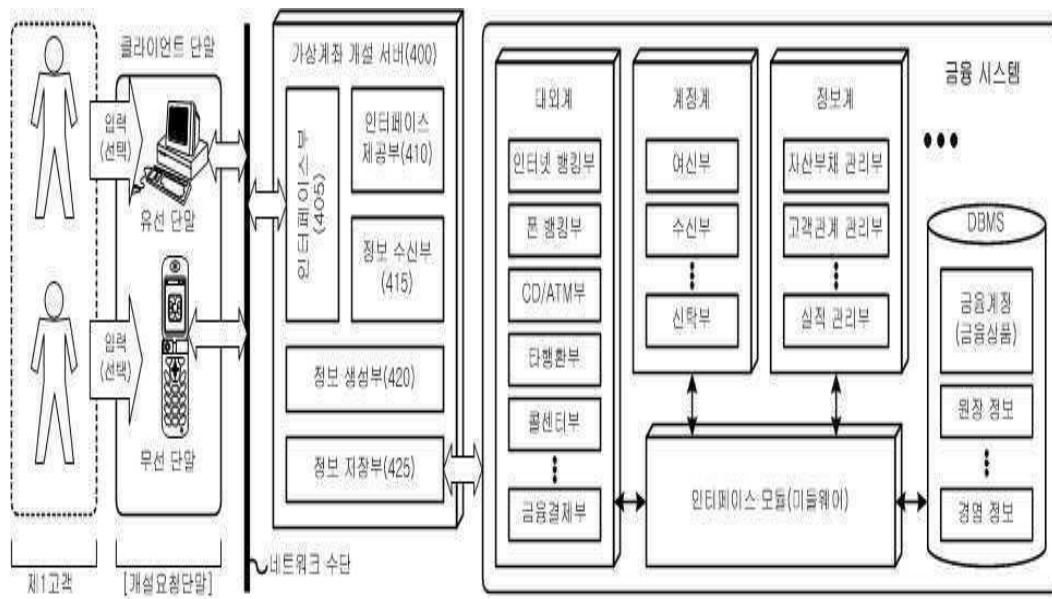
- <1>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 <2>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에 따른 가상계좌 원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 <3>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른 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4>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 <5>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에 따른 가상계좌 원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 <6>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가상계좌 개설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 <7>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가상계좌 운용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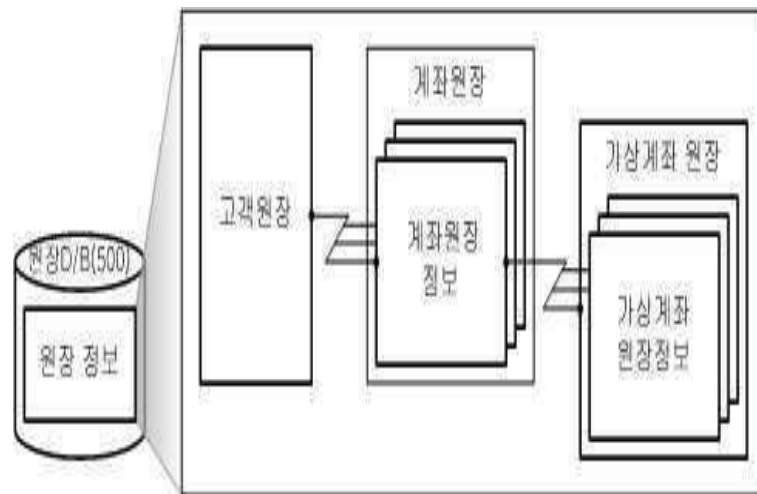
도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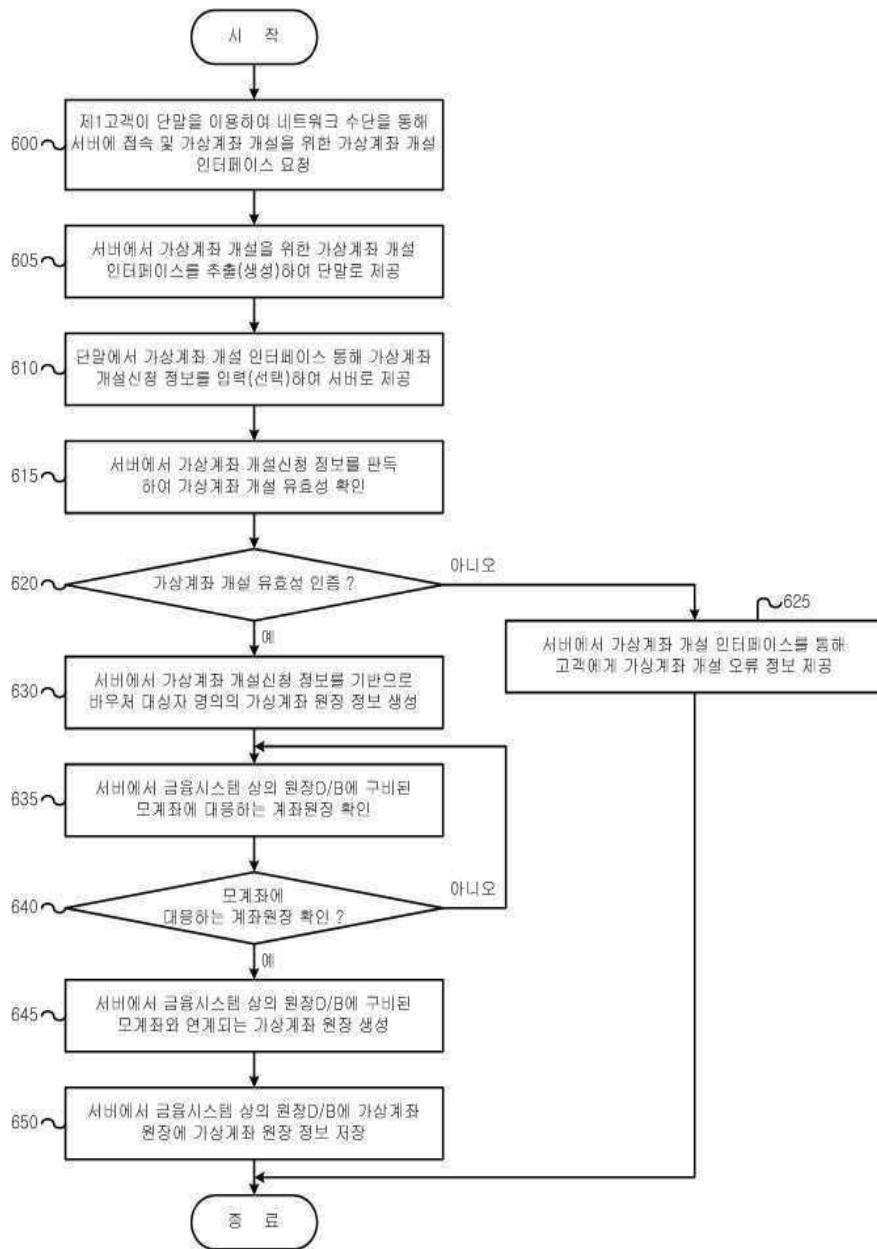
도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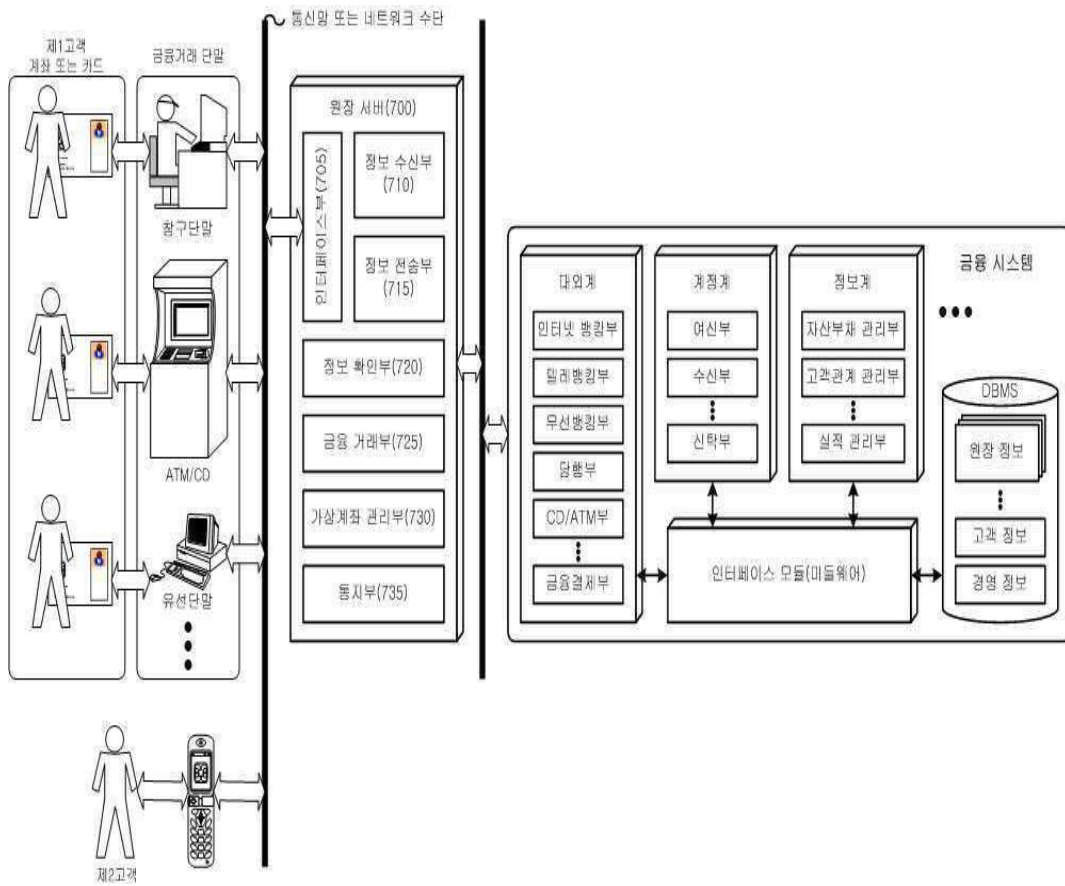
도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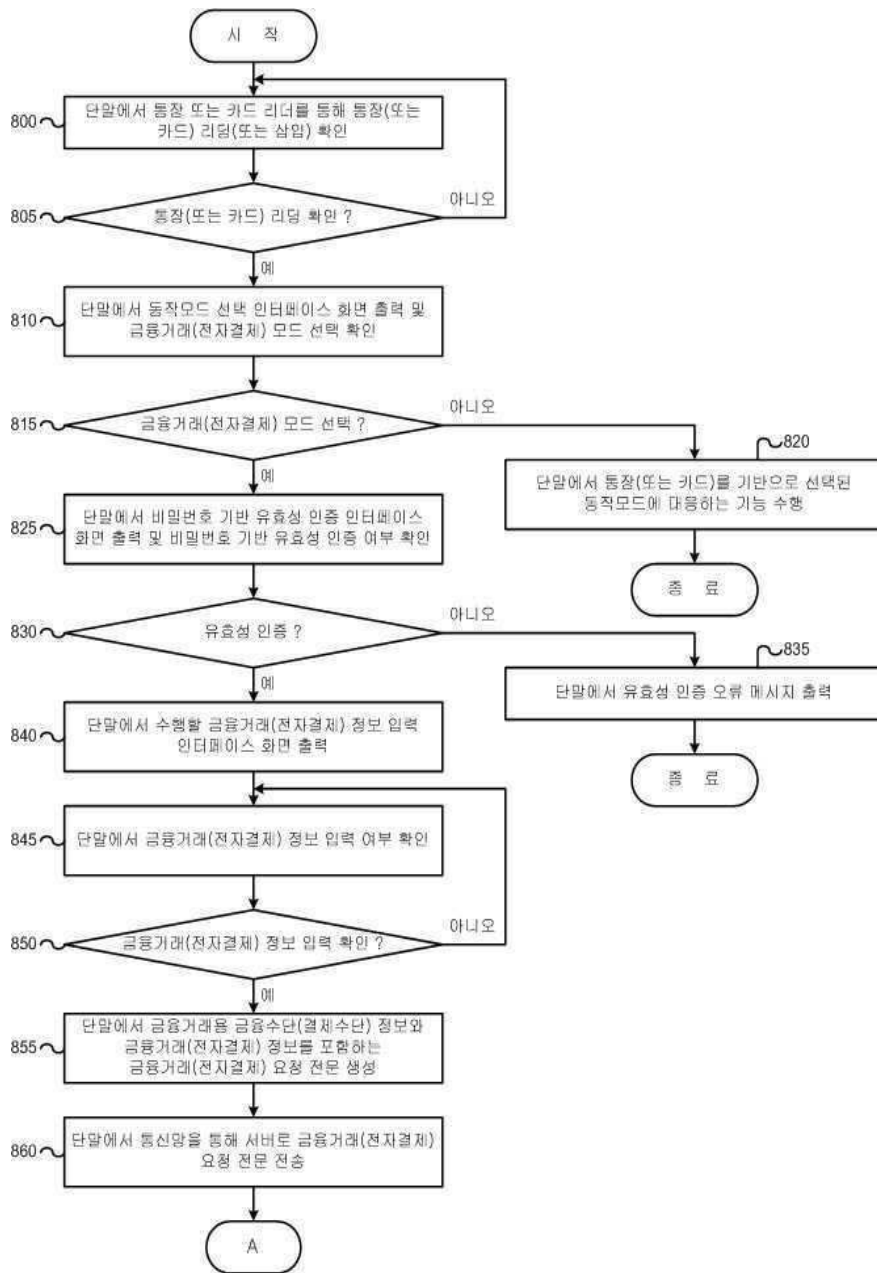
도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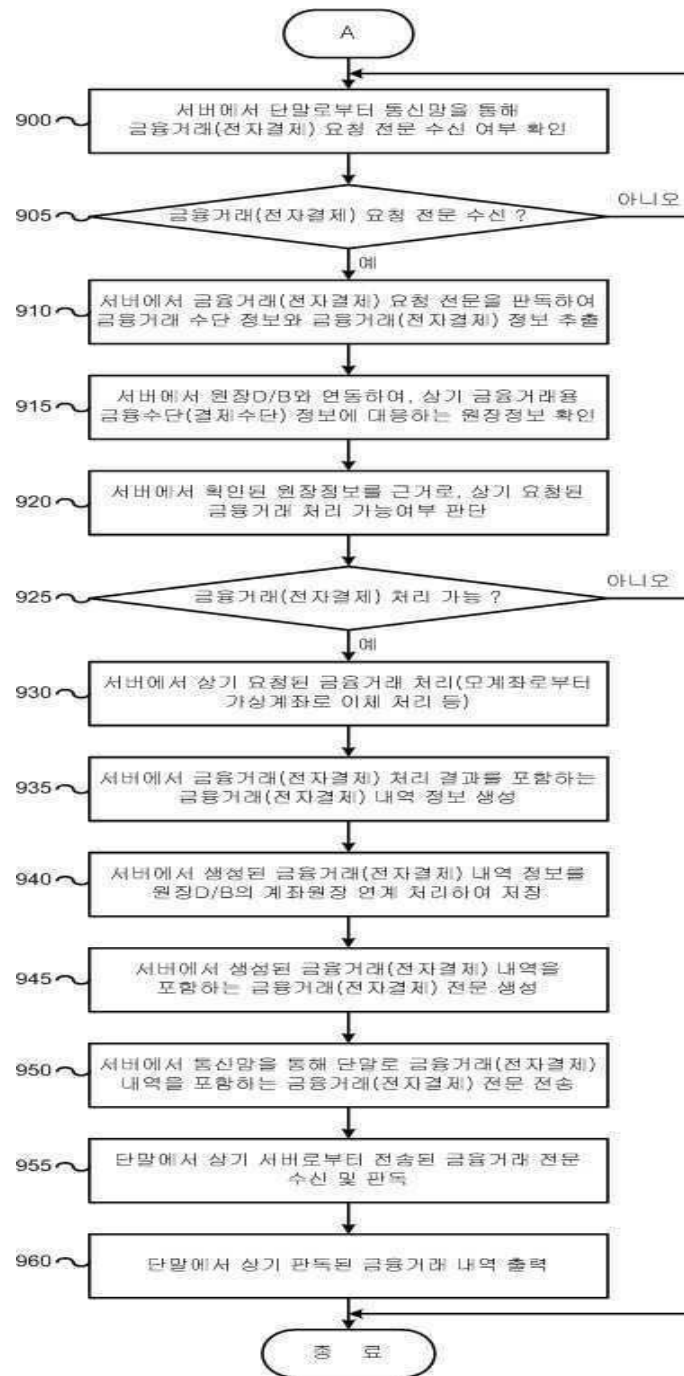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